

<첨부 1> 신규조문대비표

정 관 변 경		
개정 전 규정	개정 후 규정	비고
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)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둔다.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.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	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)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 ② (좌동)	본점의 소재지 변경